

수산자원		☐ 국내 반 입 ☐ 국 외 반 출		이 식 승 인 서	
①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:)			
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 자원	품 명		학 명		
	규 격		물 량		
	금 액		원 산 지		
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					
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 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⑤수송수단 및 통관 예정 세관			
⑥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					
⑦면허(허가 또는 신고)번호			⑧면허면적 및 수 면 면 적		
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(국외반출)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					
※ 승인조건(국내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. 국내에 반입된 품종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방류,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을 해야 하고, 방류·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기간 중 해당 품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2.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내에 반입되는 품종 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상품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.					